

발간호

제 22 호

2010 년 6 월



Zoom-in Trade

▶ COVER STORY:
유럽의 경제위기와
국내 수출기업의 영향 1

▶ FTA NEWS:
원산지검증
수출자만의 문제 아니다... 2

▶ VOICES FROM THE FIELDS:
안데스공동체(CAN)의
현황과 과제 3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⑫ 5

▶ WHERE IS GRACE CHANG?:
..... 6

▶ ABOUT WRITERS 6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EU 회원국들의 유로존이 출범 12 년 만에 최대위기에 봉착되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인접유럽 국가로의 위기전이, 유럽국가들의 연쇄적인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유럽의 경제위기와 국내 수출기업의 영향

1998 년 11 개의 EU 회원국들이 통화 단일화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유로존은 99 년 1 월 1 일에
유로화의 공식적인 도입과 함께 탄생하게 되었다.
유럽의 단일화를 위해 출범된 지 12 년 만에 유로존
최대의 위기에 봉착되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위기의 전이, 이를 막기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들,
이러한 과정 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수출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유럽과의 교역량을 늘리기
위하여 한-EU FTA 를 협의하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도미노를 생각한다면
가볍게 넘어갈 일은 절대로 아니다. 지난 미국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간 것처럼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실행해야만
자연스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럽의 경제위기 현상

국가의 경제구조가 잘못된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재정적자가 발생되면 국채를 발행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대외채무가 급증하게 되고 그러한 채무를
이행하려고 보니 채무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국가는 재정위기에 봉착되게 된다.

현재 남유럽에 문제가 되는 나라는 당장의
국가부채가 크거나 재정적자가 큰 나라들이다.
이러한 국가부채가 늘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결정적이었고 할 수 있는데 미국 금융위기로
인하여 기업은 수출이 둔화되고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된다. 즉 미국발 금융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다 보니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유럽 경제위기의 핵심은 국가부채가 크고
재정적자가 커지는 나라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하는데 국민경제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IMF 또는
EBRD 등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하는 단기적인
방안만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해결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내포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국민들 스스로 자금이
유통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니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부채는 갈수록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을 기다리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재정위기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 국가는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이지만 유로존에
속해있는 경제대국인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한국과의 교역이 많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이 과거 우리가 겪었던 IMF 경제위기에
직접적인 해당국가라고 한다면 그 영향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자본시장과
무역시장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자본시장
관점에서 볼 때에는 남유럽의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자금을 인출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환율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다.

무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아(2009 년 무역의존도 82.4%, 통계청) 해외변수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상황 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키워야 하지만 내수는
점점 줄어들고 해외의존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환율이 높으므로 원자재를 수입할 때의 원가가
자연스레 상승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가는 해외에서도
구매력 저하라는 문제로 연결되어 국내기업의 자금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해외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해 와서 지금은 60%에 육박하는데 유럽의
경기침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가 휘청거린다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우리나라는 현재 대미
수출보다 대중수출비중이 더 높은 실정이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비중은 30%에 육박한다. 이렇듯이 우리
나라는 점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유럽경제가 중국을 강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유럽의 경제위기가 확실한 해결책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세계경제에 깊게 침투한다면 한국에서도 자본시장과 무역시장 모두 심각한 위기로 번질 위험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때처럼 적절한 위기관리 정책으로 대응을 한다면 조금의 부담을 줄겠지만 기업 스스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 문제로써 우리 앞에 서있을 것이다.

□ 유럽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우리나라는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한 이력이 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지만 대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심리로

작용을 했고, 한국기업들의 품질향상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도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엔 불어 닥칠지도 모르는 유럽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항상 중요하게 작용되는 원가절감이다. 기업들이 곧 체결될 FTA 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수출시의 관세환급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하고 수입시의 환율정책을 적절히 예상하여 수입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원가절감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허리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단가인하를 통한 유럽국민들을 사로잡아야만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넓은 시야에서 본 경제위기 극복방법이다.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정착시켜

많은 고용창출과 함께 신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국민만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융위기는 더욱더 기회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이 각각 독립적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감 동 기

(dkkam@customsservice.co.kr)

FTA News

원산지검증

수출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의 대상은 각 협정 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원산지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기준 충족에 대한 증명은 원산지확인서류⁽¹⁾에 기초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을 공급하거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LOCAL 수출업체"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 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의 확인 없이 수출자가 요구하는 대로 발행하거나 심지어 수출자가 작성한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입증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지만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류에 대한 책임은 "LOCAL 수출업체"에 있기 때문에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적절하게 발급된 원산지확인서류에 대해 "LOCAL 수출업체"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원산지검증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LOCAL 수출업체"의 원산지확인서류 발급과 관련해 원산지검증 대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원산지검증제도란?

FTA 와 같이 특혜를 주기 위한 원산지제도는 수출입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협정국간 통상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당초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사후에 검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산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악용하여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적절한 원산지판정 없이 또는 위조하여 허위로 원산지를 인정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FTA 협정 및 국내 FTA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협정세율의 허위 적용에 대한 사후관리로 협정세율 적용 후 해당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 FTA 협정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 FTA 특례법상 원산지검증 규정

국내 FTA 특례법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구분	검증방식	현지조사주체	회신기간	미회신시 조치
한-칠레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없음	없음
한-싱가포르	간접검증 후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30 일	없음
한-EFTA	제한적 간접검증	수출국 세관 (수입국세관직원 참여)	10 개월	협정관세 불인정
한-아세안	간접검증	원산지 발급기관	6 개월	협정관세 불인정
한-미	직접검증 단, 섬유·의류상품은 간접검증	수입국 세관	없음	없음
한-인도	간접검증 후 직접검증	수입국 세관	3 개월	협정관세 불인정

<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식>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FTA 특례법 13 조 1 항), 반대로 계약상대국의 검증 요청에 대하여 국내 당사자(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자 및 해당물품의 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를 포함), 관련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FTA 특례법 13 조 2 항)을 규정하고 있다.

□ 원산지검증의 기본원칙 및 협정 별 검증방식

원산지검증의 기본원칙은 협정세율 적용 후 검증, 서면조사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관장은 원산지검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며,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원산지 검증의 방식은 각 협정 별로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원산지검증의 대비방안

가. 정확한 원산지 판정

FTA 특례법 22 조에서는 원산지확인서류 허위 발급 시 2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확인서류를 발행하는 "LOCAL 수출업체"는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하고 그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 전문가의 활용

업체 스스로 원산지판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산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원산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도움을 받아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원산지판정 LOGIC 을 설계한다면 효과적·효율적 원산지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구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별 자체번호 및 HS CODE, 품명, 단가, 소요량, 원산지, 공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기업체의 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확인서류 발급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EU 등 원산지관리 선진국의 경우 시스템에 의하여 원산지가 관리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를 신뢰하지 않는 편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다. 만약,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라. 원산지판정 관련서류의 보관

"LOCAL 수출업체"는 원산지확인서류를 제공한 후 공급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제공한 서류 및 공급물품의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공정명세서, 원재료의 출납 및 재고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근거로 한 원산지확인서류의 발급 및 사후관리는 "LOCAL 수출업체"에 경쟁력 제고는 물론 내수공급의 확대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적절하지 못한 확인서류의 발급과 관리는 오히려 "LOCAL 수출업체"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1) 수출자가 원산지판정을 위해 생산자 또는 재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여 제공받는 서류로 "원산지확인서"와 "수출용원재료원산지 (포괄) 확인서"로 구분된다.

(2) 원산지검증시 현지조사 및 최종결정의 주체가 수출국 또는 수입국 세관인지 여부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된다. 현지조사의 주체가 수입국세관이 되는 경우 "직접검증"이며, 수출국세관이 되는 경우 "간접검증"이라 한다.

Voices From The Fields

[중남미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④ 안데스공동체(CAN)의 현황과 과제

중남미 지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수출지향형으로 자리잡은 70년대부터 항상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손꼽아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약 33 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들 각국의 무역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다른 유럽 등의 지역과는 달리 다수의 지역통합을 위한 공동체가 설립되어 있는 독특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중남미지역 역내 및 역외의 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969. 5. 26 남미 5 개국(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및 페루)은 경제·사회적 통합과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카르타헤나 협정을 서명하였다. 이렇게 안데스 조약, 안데스 그룹, 또는 카르타헤나 협정으로 알려진 안데스 국가들의 통합과정이 시작되었다. 1973. 2. 13 베네수엘라가 가입하였고, 1976. 10. 30 칠레가 탈퇴하였다.

현재는 최초의 4 개국이 정회원이며 칠레와 MERCOSUR 국가들은 준회원국으로, 멕시코와 파나마가 옵저버로 안데스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안데스그룹의 70 년대의 정책 또는 모델은 폐쇄형 수입대체모델로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80 년대의 외채위기를 맞이하여 포기하고, 1989 년에서 갈라파고스(에콰도르)의 회의에서 무역과 시장을 우선시하는 개방형 모델로 전환하였다. 1993 년에는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였고, 1997 년에는 국제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드루히요 의정서를 통하여 카르타헤나 협정을 개혁하여 안데스 조약을 대체하는 지금의 안데스공동체를 창설하였다.

통합과정의 진전은 1993 년에 회원국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4 년에는 대외 공동관세의 적용을 결정하였다. 페루에게는 자유무역지역과 대외공동관세의 이행을 2005 년 까지 연장이 허용되었고, 대외공동관세는 상대적 저개발국가인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게 별도로 배려하여 점진적으로 이행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합의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2006 년에는 각 국의 입장차이와 문제가 심화되어 베네수엘라가 탈퇴를 하였다. 공동시장의 목표는 점차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으며,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FTA 와 관련하여 볼리비아와 페루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장의 차이를 공동체 제도의 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니 그 중에서 농수산검역의 안데스시스템, 안데스네트워크의 표준화, 세관규정의 통일화(단일세관신고서, 안데스가격신고서, 공동체 세관통행, 통합관세), 무역에 대한 긴급조치에 대한 안데스규정 등이다. 이러한 분야들은 자칫하면 진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무역분야에 대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지역통합은 통합협정의 결과로 일어나는 무역 및 경제의 역동성을 그 기반으로 한다.

안데스공동체의 경우 30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역내무역의 점유율은 매우 낮은 바 1998 년부터 2007 년까지를 살펴보면 역내무역이 전체무역의 9%를 차지하고, 역외무역이 91%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회원 4 개국은 역외무역의 62%가 농산물, 광물 및 석유인 원자재들이다. 이러한 역외시장으로의 편향은 회원국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통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합일점에 도달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회원국간의 역내무역은 통합기구 중에 UE 73%, MERCOSUR 13%, CACM(중미공동시장) 17%, ASEAN 24% 및 NAFTA 56%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역내무역의 특징은 역외무역과는 달리 교역품목에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전기에너지, 신발 및 섬유 등으로서 부가가치가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CAN 은 전면적인 공동시장의 합의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입장의 차이를 보였지만 제 3 국가의 무역협상에서는 공동보조를 맞추려 노력하는 듯했다. 안데스 공동체는 경제블록으로서 ALCA(미주자유무역지대), MERCOSUR, 최근에는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는 회원국간의 입장차이가 분명하여 블록차원이 아닌 양자협정의 형태로 전환된 경우도 많았다. MERCOSUR 와의 경제보완협정과 콜롬비아와 페루의 미국과의 FTA 협정이 그 예이다. 또한, 유럽연합과의 협상도 블록대 블록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CAN 의 내부에 현존하는 긴장감의 해소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다양한 개발모델 사이에서 적절히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다이아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개발정책의 차이를 조정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공동대외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역분야에서는 정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공동시장을 구축하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보다는 현재의 자유무역공간을 조심스레 유지하며, 역외지향의 프로젝트와 역내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동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관분야의 표준화의 상호인정 합의, 품질인증의 조정 및 환경보호, 기술적 규정의 조화 등의 절차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거시경제분야에서는 이미 안데스 회원국들은 소지역내의 거시경제 안정을 위하여 재무, 금융 및 환율정책에 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구상하고, 특정한 목표를 위한 상호조정을 하기 위한 협력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활용하여 CAN 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공존의 장을 구축하고 회원국의 경제문제에 대한 다른 비전을 상호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 정책분야에서는 회원국간에 마련되지 않은 많은 공통분야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보건, 식량안보 및 농촌개발 등이다. 또한, 역내 및 제 3 국에의 시민들의 자유이동,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부패, 마약 및 사회안전을 위한 전쟁 등에 우선적 관심을 두어야 CAN 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 오 병 열

(obyjy@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 업무,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등



담보제공 생략기준(현행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한 조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담보생략업체로 지정(지정기간: 2년)받은 때에는 담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용담보업체로 지정 받은 자는 관세법에 따른 담보제공 생략 대상으로 간주한다. 매년 신용담보업체의 경우 지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만큼 갱신신청에 따른 업무상 부담이 감소하며,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때 작년도 환급실적액을 고려하여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담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포괄담보의 경우에만 납세담보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에 담보대체통지를 하였으나, 개별담보물의 경우에도 담보담보기간을 고려해 만료일 10일전에 대체 통지를 하도록 개정 되었다.

그 밖에도 담보의 해제절차와 납세담보의 관세 총당방법이 신설되었으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입안예고는 6월 중에 의건 수렴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된다.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하여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월별납부업체의 갱신신청에 따른 업무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기존에 갱신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는 업체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갱신 시 기산일은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익일로 변경되었다. 이번 입안예고를 통해 월별납부업체 중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한도액 설정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AEO 공인업체에게는 일반업체와 차별화 되도록 월별납부 특례를 부여하여 AEO 공인 제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본 고시도 의건 수렴 절차를 거쳐 7월 1일에 시행된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신용카드 관세납부대행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관세납부대행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번 6월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카드로 관세납부를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기존 13개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의 1천분의 12로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서 유 진
yjseo@customsservice.co.kr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최근에 AEO 인증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증가한 인증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입안예고가 마련되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AEO 인증 신청 시 UNIPASS 를 통해서 전자신고 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본 고시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A, AA, AAA 로 구분되어 있는 공인 등급 기준을 법규준수도 이외에도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신청업체의 관리책임자는 16 시간의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리책임자 교육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전에는 법규준수도가 최저 공인등급 기준인 85 점 미만의 경우 공인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입안예고에서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가 70 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규준수도 기준을 대폭 완화 하였다. 법규준수도 70 점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체의 약 79%를 차지하므로 본 개정을 통해 많은 업체들이 법규준수도 개선 기회를 부여 받아 AEO 공인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공인 취득 이후 사후관리조치를 강화하여 공인업체는 주어진 혜택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명확한 공인신청의 각하 및 기각 요건 규정은 공인의 최저기준 설정 및 법규준수도의 성실한 이행 효과가 있다.

또한 예비심사제도가 도입되어 공인 신청업체의 제출 서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적절성을 임의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은 신청에 대한 사전 차단을 통해 심사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AEO 공인 취득 후 종합심사 신청근거 및 심사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인업체는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 6월 전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 후 1년 경과 시 공인업체 신청에 의한 종합심사도 가능하다. 공인업체는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시 개선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개선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새로운 공인 유효기간이 A 등급과 AA 등급의 경우 4년, AAA 등급의 경우 5년으로 연장되며, 이는 법인심사 주기와외 형평성을 고려하고 미국 및 유럽 사례를 국내에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입안예고는 6월 18일까지 의건 수렴을 거쳐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보다 확대된

혜택만큼 AEO 공인업체 증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입안예고

지난 달 20 일에 지식경제부령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예고 되었으며, 6월 중에 의건수렴을 거쳐 10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플랜트 수출 활동을 법령에 반영하여, 이미 대외무역법이 개정된 것처럼 "산업설비" 용어가 "플랜트"로 변경되었으며, 발전·정유·석유화학 설비 및 해양설비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내 항만이나, 공항의 이용상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등의 경우·환적 허가대상자를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을 한정하였다. 수입통관시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원산지표시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입안예고에서는 수입 후 원산지표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판매목적의 물품포장이나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등과 같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활동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원산지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검사하는 서류로 해당물품 등의 무역거래자,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서류, 해당물품 등의 가격, 수량,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및 기타 원산지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신규로 규정하였다. 수입업자가 제출한 상기 서류는 원산지위반여부를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이번 입안예고에서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예외적 담보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자, 체납자, 일정기준 신용등급 미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입 시 담보를 면제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담보제공대상 해당부부를 세관장에게 사전 확인 받아야 한다.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자는 담보제공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특례 기준으로 일정기준 신용등급에 미달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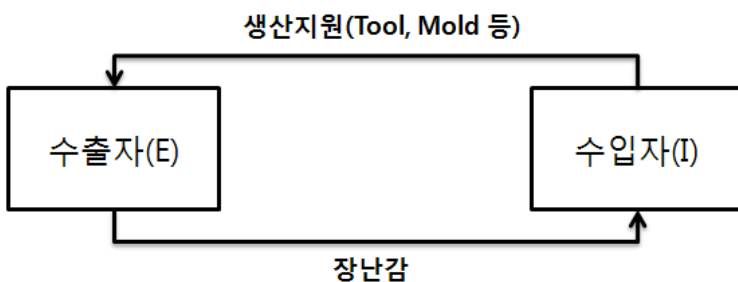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에게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생산지원비의 특정 배분방법 인정여부

(HQ H031244 '93.6.30)

Assist(생산지원비용)이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 3 호 규정의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①수입물품 생산에 사용 되는 재료 및 부분품, ②공구, 금형, 다이스 등 ③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④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디자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생산지원비용은 법정가산요소 중 하나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과세되므로 어떠한 비용이 생산지원비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합하여야 한다고(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ounting principles (GAAP))결정한 바 있음.

다) HRL542519(1981.7.21)

세관은 생산지원 비용을 첫 면세 신고 건에 배분 되거나, 관세 환급 대상으로 하는 신고 건에 배분함으로써, 생산지원 비용의 일부를 비교세 대상으로 허용되는 제안 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을 결정한 바 있음.

3. 사안검토

이 사안에서 툴, 다이스, 몰드가 생산 지원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I의 배분 방법은 SAA 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방법도 아니므로, 수입물품과 연관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님(not Reasonable manner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생산지원 물품의 내용연수(Class Life)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 제조에 요구되는 기간보다 길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는 생산지원비용의 많은 부분이 수입물품에 배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과세를 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I 의 IRS 스케줄은 비합리적이고, 적절하지 않으며 그 방식이 GAAP 에 부합한다는 사실자체는 중요치 않음.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 생산지원 비용이 남게 되므로 IRS 의 ADS 방법을 허용 할 수 없음.

□ 결정(Holding)

평가의 목적상 I 의 배분방법은 생산지원 비용 금액의 일부에만 적용되므로 관세평가 목적상 허용 될 수 없음.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배 중 한

(jhbae@customsservice.co.kr)

□ 거래사실(Facts)

1. 장난감을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자(I)는 외국의 생산자(수출자(E))에게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툴, 다이스, 몰드 등을 공급함. 동 생산 지원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장난감 생산에 전적으로 사용됨.

2. I 는 본 사안의 배분 방법도 미국 국세청(IRS)의 대체상각법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에 의해 기간에 따라 감가 상각하여 과세하고 있음.

2. 대체상각법은 주로 해외에 있는 미국 유형 자산의 과세연도에 적용되고 수입물품의 내용연수(Class life)는 3 1/2 년 임.

3. 감가상각 배분 시 반년관행("half-year convention")이 사용됨.

"half-year convention"이란 반년 동안의 감가상각 제품들이 그 해 어느 시점에서 첫 서비스 되었는지 관계없이 상품이 서비스되어 지는 첫 과세년 동안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서비스가 과세연도 말에 이루어 졌을 때 한 해 동안의 전체를 감가상각 되는 것을 방지해 줌.

4. 내용연수와 half-year convention 및 감가상각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의하여 사용되어졌으며 아래와 같이 상각 됨.

5. 국세청은 다음 내역의 감가상각 방법을 사용함.

year #1	14.29%
year #2	28.57%
year #3	28.57%
year #4	28.57%
	100%

6. I 는 생산지원에 대하여 위의 감가상각법을 적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세관은 이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거부한 바 있음.

7. I 의 수입물품을 검토해본 결과 최근 5 년 간 244 개의 장난감의 수명이 약 70%의 제품이 평균 1 년이 지나면 생산수명이 끝나므로 85%의 생산지원비용이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쟁점(Issue)

IRS 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생산지원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적용가능 한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근거

거래가격은 미관세법(19 U.S.C.) §1401a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률상 열거된 5 가지 항목을 가산한 금액이고, 생산지원비는 이 항목 중 하나임.

2. 관련지침 및 예규

가) SAA(Statement Administration Action)

생산지원 비용을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에 배분함에 있어 수입물품과 명백히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①첫 번째 수입물품 전체에 배분하는 방법, ②첫 번째 선적시점까지 생산된 양에 대해 배분하는 방법 ③수입될 전체의 양에 대해 배분하는 방법 을 제시함.

나) HRL544194(1998.5.23)

생산지원 비용의 배분 방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상황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하며(Reasonable manner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②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장승희 대표 관세사

2010 년 상반기를 보내며 연초에 세웠던 새해의 계획에 얼마만큼이나 다가서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께 제공하자' 라는 것과 '신한인(新韓人) 한사람 한사람이 발전하는 행복한 회사가 되어야지' 하는 꿈을 갖고 시작한 한 해입니다.

매일 아침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이만치 떨어져 바라보니 그 사이에 한 일이 그리 많지가 않음을 다시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많은 도전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진작에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에 비해 저의 시야가 좁은 탓으로 미처 보지를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보지를 못하니 시도도 하지 못한 것이었겠지요. 그리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족을 자인하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신한에 원하시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여쭙 봅니다.

Is there anything we can do for you?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중-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2010 년 하반기 국내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은 남유럽의 경제위기라고 합니다. 재작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넓은 세계지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그 내용과 우리의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FTA 의 혜택인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수출자뿐 아니라 동 물품을 공급하거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LOCAL 수출업체도 원산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 확인서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의 오병열교수께서 중남미 특집 시리즈 중 '안데스 공동체(CAN)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기고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orld Cup 에서 선전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16 강 진출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날들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World Cup 이후에도 계속되고 다른 분야로도 전파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열망이 저 멀리 남아프리카의 우리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함께 모아지는 정성과 열정은 더 큰 행복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ABOUT WRITERS

COVER STORY - 유럽의 경제위기와 국내 수출기업의 영향



감 동 기 관세사 (dkka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경영지원팀 팀장
- 신한인비스타 팀장
- 듀폰 한국 IBM 등 다수업체 자율심사 수행

FTA News- 원산지검증 수출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 대 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중남미 특집 안데스공동체의 현황과 과제



오 병 열 교수님 (obyjy@customs.go.kr)

PROFILE

- 現)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 前)인천공항세관
- 도미니카공화국 컨설팅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등



서 유 진 관세사 (yjseo@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공항지사
- AEO T/F Team
- 2008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US Rulings 연재② 생산지원비의 특정 배분방법 인정여부



배 중 한 관세사 (jhba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1부 팀장
- 벤처기업협회 관세환급 강사
- 대덕전자, 유한김벌리 등 자율심사 수행